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774
----------	------

2021년 12월 1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10월 14일, 문영민 의원(찬성자 27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0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1년 12월 1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문영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도로(차도·보도)와 도로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기관과 청소업무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시설물 내 차도·보도의 청소업무에 대한 담당기관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바, 도로의 차도·보도에 도로시설물 내 차도·보도를 포함토록 하여 서울특별시의 도로 청소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, 터널·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지하도로의 낮은 시인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터널·지하차도를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하는 도로사업소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도로의 정의에 차도와 보도(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), 도로시설물을 포함토록 함. (안 제3조제1호)
- (2) 낙하물 처리를 포함한 차도·보도의 청소는 자치구청장이 하되 터널·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제외토록 함. (별표 1)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도로의 정의에 ‘차도와 보도(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), 도로시설물’을 포함토록 하고, 효율적인 터널·지하차도의 관리를 위해 차도·보도의 청소 중 터널·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 업무의 관리자를 자치구청장에서 서울시 도로사업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대상) (생략)	제2조(적용대상) (현행과 같음)
1. <u>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</u>	1. <u>도로</u>
2. ~ 8. (생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의) (생략)	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<u>“도로시설물”이란 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.</u>	1. <u>“도로”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, 차도와 보도(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), 도로시설물을 말한다.</u>
2. <u>“도로(차도·보도)”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</u>	2. <u>“도로시설물”이란 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입</u>

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,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.

3. ~ 18. (생략)

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 (생략)

1. 안전총괄실장 : 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 시설물, 공동구,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(하천 구역 및 하천시설), 하수도, 그 밖의 도로부속물,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

2. (생략)

3. 기후환경본부장 : 도로(차도·보도)의 청소(낙하물 포함)

4. ~ 5. (생략)

제2장 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

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 ① 관리자는 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·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시설물별로 영 별표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·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바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·보강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도로·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·교통관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·파손,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

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.

3. ~ 18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(현행과 같음)

1. ----- 도로, 공동구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차도·보도 -----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2장 도로

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 ① ----- 도로 -----

-----.

② ----- 도로 -----
----- 도로 -----

-----.

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도로

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.

<부칙신설>

[별표 1] 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구 분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 (차도·보도) 및 도로 시설물	(생략)	자치구 청장
	(생략)	
	○ 보도관리(측구,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) ○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물 포함)	
	(생략)	
(생략)		

--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구 분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	(현행과 같음)	--
	(현행과 같음)	
	○ ----- ----- ----- ○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·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)	
	(현행과 같음)	
(현행과 같음)		

- 먼저, 안 제3조제1호는 현행 제3조제2호의 ‘차도와 보도’로 정의되고 있는 ‘도로’에 도로시설물을 추가하는 한편, ‘차도와 보도’에는 ‘도로시설물의 차도와 보도’를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.
- 여기서 현행 ‘도로’의 정의에 도로시설물을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 제2조1)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)

1) 「도로법」 제2조(정의) 1. “도로”란 차도, 보도(步道), 자전거도로, 측도(側道), 터널, 교량,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,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.
 2)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조(도로)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차도, 보도(步道), 자전거도로, 측도(側道), 터널, 교량,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.
 1. 차도·보도·자전거도로 및 측도
 2. 터널·교량·지하도 및 육교(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)

에서 ‘도로’를 차도, 보도 외에도 안 제3조제2호의 도로시설물에 정의되어 있는 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.

- 또한 ‘차도와 보도’에 ‘도로시설물의 차도와 보도’를 포함하려는 사항은 현행도 포함하여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- 다음으로, 개정안 별표1(주요시설물 관리기관)의 경우는 자치구청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‘차도 및 보도의 청소’에 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·지하차도 내 기계화 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을 제외토록 단서를 변경하려는 것임.
- 현행 조례에 따라 도로를 비롯한 주요시설물은 시설물별로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와 도로시설물은 안전총괄실장을 관리자로,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물 포함)는 자치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자치구가 지하구조물인 터널과 지하차도의 도로를 청소함에 있어 노면청소차량으로 흡입이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 시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양천구의 건의에 따라,
- 지난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정기회의³⁾를 통해 터널·지하차도 내 기계화 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의 처리를 서울시에 요

3. 궤도

4. 옹벽·배수로·길도랑·지하통로 및 무덤기시설

5.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

3) 서울특별지구청장협의회 제163차 정기회의 2021. 8. 31.

청한 바 있으며, 서울시 또한 환경미화원 출입 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 업무의 이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.

- 지하구조물인 터널과 지하차도는 시인성이 낮아 낙하물 인력 처리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터널·지하차도의 내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관리주체(도로사업소)가 낙하물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장비(사인보드차)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낙하물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바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- 참고로, 동 개정안이 2021. 10. 14.일 발의되어 10.20.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는 2022년부터 터널·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을 도로사업소에서 처리하고자 2022년도 예산(안)의 ‘도로시설물(터널, 복개, 지하차도, 세척) 일상유지보수’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영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7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4일
발 의 자 : 문영민 의원(1명)
찬 성 자 : 고병국, 권수정, 김기대, 김생환, 김인제, 김정태, 김제리, 김태수, 김희걸, 노식래, 문장길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송아량, 신정호, 양민규, 오중석, 유 용, 이광호, 이석주, 이정인, 이준형, 장상기, 전병주, 황규복 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도로(차도·보도)와 도로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기관과 청소업무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시설물 내 차도·보도의 청소업무에 대한 담당기관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바, 도로의 차도·보도에 도로시설물 내 차도·보도를 포함토록 하여 서울특별시의 도로 청소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, 터널·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지하도로의 낮은 시인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터널·지하차도를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하는 도로사업소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로의 정의에 차도와 보도(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), 도로시설물을 포함토록 함. (안 제3조제1호)

- 나. 낙하물 처리를 포함한 차도·보도의 청소는 자치구청장이 하되 터널·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제외토록 함.
(별표 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“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”을 “도로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도로”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, 차도와 보도(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), 도로시설물을 말한다.
2. “도로시설물”이란 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, 공동구, 하천 복개구조물, 하천(하천구역 및 하천시설), 하수도”를 “도로, 공동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도로(차도·보도)”를 “차도·보도”로 한다.

제2장 제목 “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”을 “도로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”을 “도로”로 하고,
같은 조 제2항 중 “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”을 “도로”
로, “도로시설물”을 “도로”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“도로·도로시설물”을 “도로”로 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	서울 특별시도	○ 도로시설물 중 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	안전총괄실장
		○ 차도관리(버스전용차로, 자전거전용도로·자전거전용차로 포함)	도로사업소장
		○ 도로시설물(한강교량, 1종 시설물(교량, 고가차도, 입체교차) 제외) ○ 보도관리(측구,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) ○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·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)	자치구청장
	자동차 전용도로	○ 차도 및 보도 관리(청소 포함) ○ 녹지 및 가로수 ○ 도로시설물	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
도로 부속물	공동구	○ 공동구	안전총괄실장
	지하보도 및 보도육교	○ 서울특별시도(자동차전용도로 포함)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(생태통로 포함)	자치구청장
	가로등·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·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안전총괄실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도로사업소장
	나머지 도로부속물 (방호울타리·중앙분리대·과속방지시설·미끄럼방지시설·충격흡수시설·낙석방지망·절개지·도로 옹벽·방음벽·맨홀 등)	○ 서울특별시도의 가로등 ○ 서울특별시도의 지하보도 및 보도육교에 대한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	자치구청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(차도 및 보도)의 나머지 도로부속물	안전총괄실장
		○ 서울특별시도(차도)의 나머지 도로부속물(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) 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	도로사업소장
○ 서울특별시도(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)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(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·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)	자치구청장		
○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	도로사업소장		
교통 관리 시설	지능형 교통체계	○ 교통정보의 수집, 제어, 가공, 제공시스템 및 관련 설비와 긴급 연락시설	도시교통실장
	버스전용 차로 단속 시스템	○ 버스전용차로(중앙 및 가로변) 유·무인 단속시스템	도시교통실장
	도로표지	○ 문안검토	도시교통실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표지	안전총괄실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	도로사업소장
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표지		자치구청장	
교통 안전 시설	신호기·안전표지	○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	도시교통실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표지	안전총괄실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노면표시	안전총괄실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 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 ○ 신호기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	도로사업소장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		○ 구 관할 도로의 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	자치구청장
교통 안전 관련 도로 부속물	시선유도표지·시선 유도봉·갈매기표지·도로반사경·차량 진입금지시설 및 무단횡단금지 시설, 교통섬 등	○ 지침운용,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	도시교통실장
		○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	안전총괄실장
		○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○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(보도의 차량진입금지시설·교통섬 제외, 중앙 및 환승정류소 보도관리 포함)	도로사업소장
		○ 서울특별시도(보도)의 차량진입금지시설, 교통섬	자치구청장
하천 시설	한강	○ 한강의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○ (육)갑문의 구조물, 조명시설 및 진입로 시설물 ○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, 정밀안전진단 등	한강사업본부장
		○ (육)갑문의 문짝, 권양기 시설물, 통로청소, 수문개폐	자치구청장
하수 도	국가 및 지방 하천(한강 제외)	○ 제방, 호안, 수제, 보, 관측시설 등 ○ 빗물펌프장(유수지 포함)의 구조물, 배수펌프 및 부대시설물 ○ 호안블록, 옹벽, 도수로, 우수토실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 ○ 수문의 구조물·문짝·권양기 등 관련 시설	자치구청장
	국가 및 지방 하천 이외 하천	○ 갑문의 구조물·문짝·권양기·통로청소·수문개폐 등 ○ 갑문의 조명시설 및 진입·진출로 시설 ○ 그 밖의 하천시설	
복개 구조물	공공하수 처리시설	○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	차집관거	○ 차집관거 및 부대시설	물재생센터소장 (위탁업체대표)
	하수관거	○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	자치구청장
복개 구조물	하천복개구조물	○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	도로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
		○ 도로기능 외 하천복개구조물	주 기능별 설치사용자
<p>비 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시설물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</p> <p>가. 청계천 제외지(淸外地)와 청계천 복개구간의 개구부(開口部) 수문 : 물순환안전국</p> <p>나. 청계천로(태평로에서 고산자로 사이에 위치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) 천변 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 : 안전총괄실장</p> <p>다. 하천과 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하천과 공원 관리자를 자전거도로 관리자로 함</p> <p>라. <삭 제></p> <p>참고1) "차도"란 보·차도 경계측구를 제외한 포장측을 말함.</p> <p>참고2) 도로부속물의 "절개지"란 도로 개설로 인하여 절토된 부분의 비탈면을 말함.</p>	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적용대상)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(이하 “시설물”이라 한다)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 <p>1. <u>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</u></p> <p>2. ~ 8. (생략)</p>	<p>제2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도로</u></p> <p>2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“도로시설물”이란 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.</u></p> <p>2. <u>“도로(차도·보도)”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,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.</u></p> <p>3. ~ 18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<u>“도로”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, 차도와 보도(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), 도로시설물을 말한다.</u></p> <p>2. <u>“도로시설물”이란 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.</u></p> <p>3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 시장은 안전총괄실장, 도시교통실</p>	<p>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 ----- -----</p>

장,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국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물의 총괄관리자로 지정한다.

1. 안전총괄실장 : 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, 공동구,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(하천구역 및 하천시설), 하수도, 그 밖의 도로부속물,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

2. (생략)

3. 기후환경본부장 : 도로(차도·보도)의 청소(낙하물 포함)

4. ~ 5. (생략)

제2장 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

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 ① 관리자는 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·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시설물별로 영 별표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·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도로(차도·보도)

-----.

1. -----도로, 공동구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 차도·보도-----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2장 도로

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 ① ----- 도로-----

② ----- 도로-----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 (차도· 보도) 및 도로 시설물	서울 특별시 도	(생 략)	
		(생 략)	
		○ 보도관리(측구, 자전거전용 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) ○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 물 포함)	자치구 청장
	(생 략)		
(생 략)			

구 분	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	서울 특별시 도	(현행과 같음)	
		(현행과 같음)	
		○ ----- ----- ----- ○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 물을 포함하되 터널·지하 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 가능한 낙하물은 제외)	----- -----
	(현행과 같음)		
(현행과 같음)			

문서번호

2021100600000002

미참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문영민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원상 팀장
박주용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10.06

회신일 : 2021.10.12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별표 1] 개정에 따라 종전 자치구에서 처리하던 터널·지하차도 내 낙하물 중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를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처리비용 발생

※ 서울시내 터널·지하차도 : 113개(터널 32개, 지하차도 81개)

※ 낙하물 종류 : 교통사고 잔해물, 화물차 낙하물, 폐건물자재, 무단투기물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1) 추계결과 = 1,777,080천원(연평균 355,416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55,416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2~2026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연간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터널·지하차도 낙하물 처리건수는 '21년 상반기 자치구에서 처리한 터널·지하차도 낙하물 접수대장상 처리건수 85건에 접수대장 미등록 건수를 감안한 3배인 255건에 연간으로 환산하여 510건으로 전제
-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발생시 처리인력 및 장비는 보통인부 2명에 사인보드 1톤(운전자 1명 포함) 1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되, 현장출동부터 처리시간은 총 4시간에 야간할증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
-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

2)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비용(합계) = 1,777,080천원(연평균 355,416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2022	2023	2024	2025	2026	계
	세입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터널·지하차도 낙하물 처리 ([별표 1])	355,416	355,416	355,416	355,416	355,416	1,777,080
	소계(b)	355,416	355,416	355,416	355,416	355,416	1,777,080
□ 총 비용(b-a)		355,416	355,416	355,416	355,416	355,416	1,777,080

-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터널·지하차도 낙하물 처리 = 1,777,080천원
 - = (처리인력 비용+장비 비용) × 5년
 - = (179,607천원+175,809천원) × 5년
- 연간 처리인력 비용 = 18,060원(시간당 보통인부임) × 2명(인원) × 510건(처리건수) × 4시간(건당 처리시간) × 1.875(야간할증) × 1.3(제경비 30%) = 179,607천원
- 연간 장비 비용 = 66,293원(시간당 사인보드 1톤 사용료, 운전자 1명 야간할증 포함) × 510건(처리건수) × 4시간(건당 처리시간) × 1.3(제경비 30%) = 175,809천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 조도형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예 산 분 석 관 박주용

☎ 02-2180-7954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